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의 보호 의무 부과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2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의 보호 의무 부과(안 제14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4.

다. 회 부 일 : 2026.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의 보호 의무 부과(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안은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② 게임물의 이용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이용정보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이용정보 보호 및 이전) ① <u>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u> ② <u>게임물의 이용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정보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 및 조치를 하여</u>

현행	개정안
	야 한다.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정보의 범위, 이전의 절차·방법 및 <u>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¹⁾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²⁾는 정부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게임물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서비스 중

1) “[기자수첩] 웹젠 사태가 던진 질문”, 뉴스락, 2026.3.12.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단이나 계약 종료 시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② 게임물의 이용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이용정보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게임물 배급·제공 등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록 등이 소멸되는 피해를 방지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계약 분쟁으로부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³⁾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전을 원하는 게임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게임물 이용자의 보호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서비스 종료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게임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로 인한 서비스 제공자 변경 등)에 국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면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에 따른 이용정보 보호 및 이전 조치가 사실상 철수 장벽으로 기능하여 게임사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게임 이용자의 데이터와 운영로그 등을 이전하게 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게임사와의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역차별 심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79